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순애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위 신고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박사학위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그 신고의무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자 하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25. ~ 2022. 1. 4. / 2022. 8. 2. ~ 8. 12.)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외국박사학위의 신고)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, 학위증명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.

1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: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
2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: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
3.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: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특례)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

위를 받은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1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7조(외국박사학위의 신고) 외</u> <u>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</u> <u>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</u> <u>국한 날(귀국후에 박사학위를</u> <u>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)</u> <u>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</u> <u>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</u> <u>1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</u> <u>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	<u>제17조(외국박사학위의 신고) 외</u> <u>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</u> <u>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</u> <u>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</u> <u>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</u> <u>이내에 해당 학위논문, 학위증</u> <u>명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</u> <u>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</u> <u>게 신고해야 한다.</u> 1. <u>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</u> <u>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:</u> <u>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</u> 2. <u>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</u> <u>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:</u> <u>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</u> <u>월 이내</u> 3. <u>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</u> <u>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</u> <u>국적을 취득한 경우: 대한민국</u> <u>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</u> <u>이내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학술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71